#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37 발의연월일: 2021. 5. 17.

발 의 자:이상헌・양정숙・홍정민

김홍걸 · 장철민 · 문진석

김민석 • 이용호 • 신동근

강병원 · 김정호 · 안민석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하여 고액의 보호비와 함께 동물을 파양받은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곳으로 입양을 보내는 신 종펫숍의 행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신종펫숍은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된 사람들로부터 동물을 파양받아 보호하고 새로운 가정에 입양을 보내는 입양중개업의형태를 띄고 있고, 파양하는 사람 및 입양하는 사람으로부터 비용을수취하면서도 파양동물에 대한 관리는 부실하고 관련 정보도 제대로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는 통상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이 비영리목적의 보호시설로 여겨진다는 점을 이용, "동물요양보호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홍보하고 있음.

이에 파양된 동물을 입양중개하는 영업을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에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등록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이 영리 목적의 상행위의 홍보에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신설하고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니면 동물보호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5조의2 및 제32조제1항제9호신설 등).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동물보호소"란 비영리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구조·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동물보호소의 설치·운영 신고) ① 동물보호소를 설치·운 영하려는 자는 동물보호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니면 동물보호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동물입양중개업

제33조제1항 중 "제8호까지의"를 "제9호까지의"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8호까지의"를 각각 "제9호까지의"로 한다.

제47조제2항제5호의2를 제5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한 자

5의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호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물보호
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
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 "동물보호소"란 비영리 목적
	<u>으로 유실·유기동물, 피학대</u>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구조・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u>&lt;신 설&gt;</u>	제15조의2(동물보호소의 설치ㆍ
	운영 신고) ①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동물보
	호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니면
	동물보호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u>다.</u>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1	반된	부동물	불과	관립	보된	다
음	각	호의	영익	<b>검을</b>	하티	부는	자
는	농림	]축신	<u></u> 신품	부량		로 정	성하
는	기준	들에	맞는	시설	<b>킬</b> 과	인력	ᅾ을
갖결	추어	야 힌	다.				

1. ~ 8.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 5호부터 <u>제8호까지의</u>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 제37조(교육) ① 제32조제1항제2 호부터 <u>제8호까지의</u> 규정에 해 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 38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u>제8</u>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 업을 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등) ①	_
	_
	_
	_
<u>,</u>	
1. ~ 8. (현행과 같음)	
9. 동물입양중개업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_
	_
제9호까지의	_
	_
	_
	_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교육) ①	_
<u>제9호까지의</u>	_
	_
	_
	-
	-
② <u></u> 利	9
호까지의	_
	_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 ⑤ (생 략)
- 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 (생 략) <신 설>

<u><신 설></u>

 5의2.
 (생 략)

 6. ~ 15.
 (생 략)

 ③・④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물보
호소를 설치・운영한 자
5의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동물보호소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u>5의4.</u>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6. ~ 1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